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283

발의연월일: 2024. 7. 2.

발 의 자: 박홍근 · 김영호 · 박상혁

이수진・정을호・김 윤

이용선 · 서영교 · 강유정

정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였음.

우리나라와 같이 군부로부터 민주주의로의 국가 체제 전환을 경험한 국가에서는 과거 억압적 정권의 국가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청산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됨. 과거 청산의 실현은 주로 형사재판, 진실위원회, 배상 등의 형태로 구체화 됨.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어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헌정질서파괴범죄' 및 '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배제를 명문화하였고, 같은 시기에 제정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서도 공소시효 정지의특례를 규정하여 반인권적 국가범죄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는 공소시

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음.

과거 청산의 구체적 내용 중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 조차 극히 일부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적용됨에 따라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큰 상황임.

따라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 가 있음.

또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배상을 통한 과거 청산을 완수해야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에 의해 형사상·민사상 특례의 적용을 받는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안 제3조).
-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 구권에 대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안 제4조).
- 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해서는 이 법을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함(안 제5조).

- 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에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2조).
- 바.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는 진정소급효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진정소급효를 부여함(부칙 제3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범죄 및 조작·은폐행위 관련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 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 를 정함으로써 국가권력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정의) 이 법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 1. 공무원(「행정기본법」 제2조제2호나목의 공무수탁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를 범한 경우
 - 2.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형법」 제125조의 죄를 통하여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3. 군의 지휘관·지휘자가 「군형법」 제62조의 죄를 통하여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4. 수사 또는 기소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하기 위하여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제151조, 제152조, 제155조, 「국가보안법」 제12

조의 각 죄를 범한 경우

- 제3조(공소시효의 배제) ①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 제4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
 - ②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국가재정법」 제96조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나 소멸시효 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 특례의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 제3조(소멸시효 특례의 소급적용) ① 이 법 시행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 ②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